

대학원 학·석사 연계과정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 「대학원 학칙」 제21조제8항에 근거하여 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행범위) 학·석사 연계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석사학위과정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·석사 연계과정을 시행한다.

제3조(수업연한) 학·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6. 9. 1.)

1. 학사학위과정: 4년(5년 또는 6년)
2. 석사학위과정: 1년

제4조(지원자격 및 신청) ①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6. 9. 1.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능 학기에 재학 중인 자(학칙 제5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준)
 - 가. 4년제: 6학기 또는 7학기
 - 나. 5년제: 8학기 또는 9학기
 - 다. 6년제: 10학기 또는 11학기
 2. 재학 중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9학점(최대 12학점)을 제외하고 졸업이 가능한 자
 3. 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② 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 학과는 학부과정의 주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및 관련 전공에 한하며, 복수지원은 불허한다.
- ③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 1부
2. 추천서 1부
3. 성적증명서 1부
4. 면학계획서 1부

제6조(전형방법)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, 추천서, 면학계획서 등과 학과(전공)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, 평가한다.

제7조(모집단위 및 인원)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에 한한다.

-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% 이내로 한다.
- ③ 모집요강은 매 학기 공고한다.

제8조(교과목이수 및 학점인정) ① (삭제 2026. 9. 1.)

- ② 학부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교과목은 대학원 입학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9조(입학자격)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의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은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

3. 1., 2023. 9. 1. 2026. 9. 1.)

1.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없이 학부 졸업(재난 및 감염병 등의

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함)

2. 학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9학점 이수(최대 12학점)

제10조(등록 및 취소) ①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1. 제9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
2. 대학원 신입학 등록 전에 학·석사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
3. 대학원 신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자

제11조(준용규정) ① 학·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, 학부 재학 중에는 「학칙」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「대학원 학칙」을 적용한다.

②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「학칙」,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'규정류'로 제정되었음

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내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개정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